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20488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111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204887 판결

### 전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

담당변호사 신민수

변론 종결2022. 11. 10.

판결 선고2023. 1.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553,821,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82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B의 의료법위반 등 행위 및 관련 형사판결

1)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8)은 2018. 1. 12.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C, D의 제의로 E조합(이하 '이 사건 E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C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경 C로부터 이 사건 E조합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고 이 사건 E조합의 이사들을 자신의 지인들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또조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E조합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부터 2017. 3.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0,571,48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59,911,190원을 교부받아 합계 3,790,482,6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합계 1,359,911,19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B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8. 7. 11.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노38).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1. 15.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2046).

#### **나. 원고의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원고는 B에게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등 행위와 관련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15.까지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비용 3,232,502,430원'에 대하여 2017. 8. 4.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2017. 9. 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 **다.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1) B은 2017. 2.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4. 10. 24. 등기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사이인

2017. 3. 27.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가액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53,82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B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4. 15.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채권<sup>1)</sup>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런데 환수금채권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016. 5.경부터 시작된 원고의 의료법위반 등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계속 중이었고 그에 따라 2017. 4. 15.까지 환수금채권이 계속 발생된 점에 비추어, 위 환수금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부분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 2)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 내지 18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                                                                                 |                                                                       |
|----|------------------------------|---------------------------------------------------------------------------------|-----------------------------------------------------------------------|
| 1  | 이 사건 토지                      | 248,859,000                                                                     | 130,000,000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
| 2  | 이 사건 건물                      | 414,715,950                                                                     |                                                                       |
| 3  | 제주시 I                        | 5,141,4003) 2017년<br>개별공시지가 11,400원/m <sup>2</sup> ×<br>면적 451m <sup>2</sup>    |                                                                       |
| 4  | 제주시 J                        | 47,139,0004) 2017년<br>개별공시지가 11,400원/m <sup>2</sup> ×<br>면적 4,135m <sup>2</sup> |                                                                       |
| 5  | 제주시 K                        | 6,829,5505) 2017년<br>개별공시지가 4,550원/m <sup>2</sup> ×<br>면적 1,501m <sup>2</sup>   |                                                                       |
| 6  | 원고의 피고에 대한<br>요양급여비용<br>환수채권 |                                                                                 | 3,232,502,430                                                         |
| 합계 | 722,684,900                  | 3,362,502,430                                                                   |                                                                       |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9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와 동기, 내용, 이행과정,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2014년경 L의료재단에 근무하면서 위 재단이 운영하던 M병원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년경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4. 30.까지 M병원의 장례의전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여 원룸으로 임대하고 차임을 받아 생활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② B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약 1억 4,800만 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약 2억 5,000만 원을 지출한 점과 B이 공인중개사에 매도 의뢰를 할 당시 들었던 시세 등을 토대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11호증)을 고려할 때 위 매매대금은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③ B과 피고는 매매대금 5억 원을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1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 5억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              |              |             |                                       |
|--------------|--------------|-------------|---------------------------------------|
| 계약금          | 2017. 1. 9.  | 5,000,000   | 계좌이체                                  |
| 2017. 1. 10. | 45,000,000   | 계좌이체        |                                       |
| 중도금          | 2017. 2. 22. | 229,000,000 | 6) B의 처가 운영하는 N장례식장 명의 계좌로 이체<br>계좌이체 |

|              |              |                                                |      |
|--------------|--------------|------------------------------------------------|------|
| 계약금          | 2017. 1. 9.  | 5,000,000                                      | 계좌이체 |
|              | 71,000,000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상계처리           |      |
| 잔금           | 2017. 3. 25. | 3,000,000                                      | 계좌이체 |
| 2017. 3. 25. | 147,000,000  | 피고 소유 아파트7) 경산시 O P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은 수표를 지급 |      |
| 합계           | 500,000,000  |                                                |      |

④ 이 사건 매매대금은 2017. 3. 25. 지급완료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3. 27.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각 말소되었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3.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근접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래관행과 일치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고 차임을 받아오고 있다.

⑥ 한편, ㉠ 피고는 B 처의 사촌의 남편으로 B와 사촌동서지간인 사실, ㉡ B은 2011. 3.부터 2015. 7.까지 L의료재단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1. 3. 1.부터 2015. 4. 30.까지 L의료재단이 운영하는 M병원의 장례의전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 B은 2015. 4. 13.부터 2017. 3. 2.까지 이 사건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중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 피고는 B의 제의로 2016. 5. 27.부터 2017. 3. 2.까지 이 사건 E조합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 ㉤ 원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1.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행정조사를 한 다음 2016. 12. 6.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 ㉥ 피고는 B의 의료법위반 등 행위에 대한 방조혐의로 2017. 6. 30. 경찰조사를, 2017. 8. 17.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 피고와 B이 사촌동서지간이고 L의료재단에서의 근무기간이 일부 겹치기는 하나,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와 B의 이 사건 E조합에서의 재직기간이 일부 겹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이 사건 병원 운영기간 및 피고의 등기이사 재직기간 중에 체결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B이 이 사건 E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조합운영은 내가 모두 알아서 하는 것이니 공부상 이사로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총회, 이사회, 청산총회에 각 1번씩 참석하기만 하는 등 이 사건 E조합 및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자세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 운영상황 및 B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㉔ 대구지방법검찰청소속 검사는 피고의 의료법위반 등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에 관하여 2017. 11. 28. '이미 설립된 이 사건 E조합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합원 가입과 이사 등재를 승낙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B의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㉕ 피고로서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2017. 6. 30. 무렵 B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㉖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병원 운영상황 및 B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은 피고의 '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음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훈

판사손용도

판사이호선

별지

1) 2021. 9. 16. 기준 요양급여비용 환수원리금 합계 3,523,423,700원(= 원금 3,232,502,430원 + 연체금 290,921,270원)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3)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m<sup>2</sup> × 면적 451m<sup>2</sup>

4) 2017년 개별공시지가 11,400원/m<sup>2</sup> × 면적 4,135m<sup>2</sup>

5) 2017년 개별공시지가 4,550원/m<sup>2</sup> × 면적 1,501m<sup>2</sup>

6) B의 처가 운영하는 N장례식장 명의 계좌로 이체

7) 경산시 O P호 아파트